

대학원 치의학과 운영 내규

제정: 2022.2.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에 따라 치의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석·박사학위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이후 '학위' 생략)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치의학과 소속 교수들은 치의학과 석·박사 및 통합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학생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수업연한은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개 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석사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33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하며, 박사과정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 통합과정은 78학점(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5조 (과목개설) ① 학과는 공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개설한다. ② 전공별로 전공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교과목 개편과 변경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전공교실별로 학기마다 1개의 전공선택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1학기 말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정한다. 다만, 논문 지도교수는 2년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않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과 관련

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공변경, 지도교수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1학기 전, 박사과정은 논문 제출 2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6명 이내로 하되,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장 학위 청구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연구학점 제외),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연구학점 제외), 전공과목 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연구학점 제외)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 및 채점) ①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응시하고,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응시한다. ②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은 구두 또는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①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KCI급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경우(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 한함) 치의학과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②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의 면제기준에 따르고, 통합과정을 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면제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은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대상이 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의 대상이 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2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① 석사 과정은 졸업을 위해 학위 논문을 제출하며 별도의 논문대체 규정을 두지 않는다. (2017.9.28. 전공교실대표자회의)

제13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① 석사학위 취득 과정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3학기 말까지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통합과정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통합과정을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KCI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016.6.7. 전공교실대표자회의)

제7장 학위청구논문 작성과 제출 및 심사신청

제15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②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여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심사 신청) ① 석사학위,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료 요건 충족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3. 연구윤리교육 이수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심사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4. 이력서(박사학위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 심사용 논문의 구성요소로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

③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주 논문 이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학칙 참조)

제17조 (예비발표) ①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앞서 예비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예비발표 대상자는 예비발표를 시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출된 자료(파일 포함)는 교학행정실에 보관한다.

1. 예비발표 초록, 발표 ppt, 발표 사진, 판정지 등 (파일의 형태로 제출한다)
2. 예비발표 심사위원 명단(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주임교수가 승인하며, 석사학위청구는 3명, 박사학위청구는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논문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청구논문은 3명,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명)이 한다. ②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2/3,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논문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결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재학 연한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의 수료만을 인정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전공교실대표자회의(치의학 과 각 전공교실의 대표자로 구성)에서 해당 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교실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이때 의결 원칙은 치의학과 내규를 따른다.

부칙(2022.2.11.)

제1조 (시행일) 이 대학원 내규는 202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